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036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 1. 19. '수산물 가공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8. ○○시 ○○○○구 B 공장용지 2366.4㎡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8. 취득가액 3,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6,000,000원, 지방교육세 1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00원, 합계 156,4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6.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75%(위 136,000,000원 중 102,000,000원)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창업일(법인설립일) 당시 업종은 운수창고업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처음부터 수산물 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장 등 제조설비가 갖추어져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설립 당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법인설립등기시 목적사업에 수산물 제조업을 기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19. 2. 20.경 변경등기시 목적사업에 냉동창고업, 도소매업 등만 추가하였다. 법인설립등기시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원고가 굳이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무사 사무실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20. 6.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6. 15.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에 대한 추가설비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수산물 제조과정의 HACCP[1] 인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1. 1. 19.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수산물 가공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였고, 2021. 1. 29.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을 제조업/농·수·축산물 가공업으로 정정신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20. 7. 1.부터는 6개월마다 10~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설립등기 시점에 제조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창업예외사유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한편 조세의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은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제조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호 주식회사 A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A	2021.1.19. 변경 2021.1.22. 등기
본점 ○○○도 ○○시 ○○○○구 C, D	
○○○도 ○○시 ○○○○구 E	2020.6.15. 변경 2020.6.15. 등기
목적	
1. 부동산 임대업	<2019.02.20. 삭제 2019.02.20. 등기>
1. 부동산 매매업	<2019.02.20. 삭제 2019.02.20. 등기>
1. 부동산 개발업	<2019.02.20. 삭제 2019.02.20. 등기>
1. 부동산 컨설팅업	<2019.02.20. 삭제 2019.02.20. 등기>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9.02.20. 삭제 2019.02.20. 등기>
1. 농, 축, 수산물 냉동창고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수산물 도소매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수산물 무역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1. 수산물 전자상거래업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부동산 임대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부동산 매매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부동산 개발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부동산 컨설팅업	<2019.02.20. 추가 2019.02.20. 등기> <2021.01.19. 삭제 2021.01.22. 등기>
1. 농, 축산물 도, 소매업	<2019.07.01. 추가 2019.07.08 등기>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어업경영과 수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수산장비 등의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농, 축, 수산물 냉동창고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수산물 무역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수산물 전자상거래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수산물 가공 제조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약선요리 개발 및 제조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일반음식점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집단급식 유통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농, 축, 수산물 운송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식품 제조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기타어업회사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21.01.19. 추가 2021.01.22. 등기>
1. 냉장, 냉동 창고 임대업	<2022.12.12. 추가 2022.12.15.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9년 2월 13일

2) 원고는 2019. 2. 25. '운수업/냉장 및 냉장창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3) ○○세무서장의 2022. 3. 15.자 사실증명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위 납세자는 2021년 01월 29일자로 주업종을 630202 운수업/냉장 및 냉동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에서 151304 제조업/농·수·축산물 가공으로 정정 신고하였습니다. 위 납세자는 2021년 01년 29일자로 부업종 4개(12231 519113 701201 703014)에서 부업종 6개(11000 154909 512212 512233 525101 630203)로 정정 신고하였습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인설립등기 당시 업종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장을 경매로 취득하고, 그 사업의 허가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2], 당초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은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고 있으므로,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설립등기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설립등기시(2019. 2. 13.)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 6. 8.이고[3], 원고가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1. 1. 19.이다.

④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등기 무렵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2. 20. 목적사업에 '농, 축, 수산물 냉동창고업, 수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무역업, 수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바 있으나, 제조업은 추가하지 않았다.

⑤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9년 매출액은 상품매출 75,270,031원으로, 2020년 매출액은 제품매출 1,104,324,844원과 보관료수입 92,809,061원으로 확인되고, 위 2019년 매출액(75,270,031원)은 도소매업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9. 2. 13. 설립등기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개시된 시점은 원고 설립등기시(2019. 2. 13.)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 7. 8.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이○○

판사 윤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끝.